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의 사용 금지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3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의 사용 금지 및 벌칙 신설 (안 제16조, 제23조)	2
2.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등(안 제16조의2 신설)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8. 30.

다.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의 사용 금지 및 벌칙 신설(안 제16조, 제23조)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추가하고(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생략) <u><신설></u> 3.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 ----- ----- ----- -----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2. (현행과 같음)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제1호 또	제23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제1호, 제

현행	개정안
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2. (생략)	2호 또는 제3호를----- ----- -----. ② 제16조제1항제4호를----- ----- -----. ③ ----- ----- -----. 1. 제16조제1항제5호를----- ----- 2.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¹⁾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제1호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¹⁾로 변경하고, 「식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²⁾을 제3호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³⁾,

학교는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아직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어 유해 물질 등에 성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음.

다만, 현재 「식품위생법」 제18조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

2)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3)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유전자변형 식품등의 사용 자제)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유전자 변형식품등 사용)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이하 “방사성물질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등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는 안전성 심사를 수행한 후 유통되고 있어, 그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된 측면이 있고,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식품등을 일시에 그 사용을 금지한다면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 식재료 조달의 불안정성 등을 초래하여 안정적인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학교급식에 사용이 금지되는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추가하는 대신 현행 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가 제외된다면, 원산지 허위기재로 인한 안전성과 품질 저하 및 공정한 시장 경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교육부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 등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정부(식약처 등)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식재료를 유통하고 있으며, 소비단계인 학교급식에서도 이러한 검사 절차를 거친 적

4) 「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합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에서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처인 학교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하였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재료에 대한 정보도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선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⁵⁾.

일부 시·도교육청⁶⁾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유전자변형식품만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수급 가능 여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재원조달 등의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 제조한 식품이더라도 최종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 제조된 식품인지 확인이 어려워 사용금지에도 한계가 있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 안전성 심사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 수산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표시 대상 제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로 혼입된 경우와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식용유지 등)

6)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교육청

2.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등(안 제16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를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이하 “방사능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를 유통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 중인데,

「식품위생법」 제7조7)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고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⁹⁾ 등은 식품이나 농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7)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0) 방사능 기준

핵 종	대 상 식 품	기준(Bq/kg, L)
^{131}I	모든식품	100 이하
$^{134}\text{Cs} + ^{137}\text{Cs}$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 이하
	기타 식품*	100 이하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9) 「식품위생법」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하 생략)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시 식재료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¹⁰⁾ 학교급식에서 이를 추가로 규율해야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부는 국내 및 수입 식재료 등에 대하여는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식재료를 유통하는 체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방사능 검사체계 아래에서 소비단체인 학교급식에 별도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이하 생략)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와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이하 생략)

10)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처리제(水處理劑),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가 필요하고,

학교급식 식재료가 대부분 당일 아침에 납품되는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해 검체(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 후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학생들이 섭취한 이후이므로¹¹⁾, 방사능 검사는 식재료 출하·생산·유통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부산, 강원, 경남교육청은 방사능 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충남교육청은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는 「식품위생법」 제4조¹²⁾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¹³⁾에 따라 유통이 금

11) 방사능검사 검체의뢰 시험처리기간(예시) : 16일(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12)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되고 있고, 소비단계인 학교에서의 사후 검사는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한 후 결과가 나오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